원칙 앞에 당당하게 필요할 때 단호하게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2026년 임시대의원대회

일 시 : 2026년 10월 30일(금) 09:00~18:00

장 소 : 모바일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심 의 안 건

안건1) 규약 개정

1 개정 이유

❍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 제4대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공약 사항인 '청년 조합원 부담 완화' 이행에 따른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4조(조합비) 개정(2027년 1월 1일 시행)

2 개정(안)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4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월 15,000원 정액으로 하며, 조합원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인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04.07.> ②·③ (생 략)	**제4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정률제로 하며 매월 조합원 급여 중 기본급의 0.5퍼센트로 한다. 단, 최대 납부액은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인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04.07.> ②·③ (현행과 같음)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제정 2019. 05. 31]
[개정 2020. 02. 11]
[개정 2021. 10. 27]
[개정 2022. 05. 12]
[개정 2022. 12. 20]
[개정 2023. 06. 08]
[개정 2023. 11. 10]
[개정 2024. 03. 08]
[개정 2026. 04. 07]

[개정 2026.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하“조합”) 이라 하고, 약칭은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라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근무여건 유지·개선과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3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파주시청 내에 둔다.<개정 2023.11.10>

제4조(법인 및 서류비치)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 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단체 가입)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6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년 연중 사업 계획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한다.<개정 2023.11.10>

1. 조합 조직의 정비, 강화
2. 조합원 근무여건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
3. 조합원 상부상조 계획
4.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 사업
5. 불합리한 행정제도(시책) 개선 대책
6. 기타 조합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파주시청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1.10.27.>

② <삭제 2021.10.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청원경찰 등은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④ 퇴직조합원은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

(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후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2개월이 지난 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신설 2021.10.27.><개정 2022.12.20>

③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탈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한다.<개정 2022.12.20.>

④ 퇴직조합원은 퇴직하는 시점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별지4호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여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03.08>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단, 퇴직조합원이 특별조합원이 된 경우는 자격유지)<개정 2023.11.10>
2.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경우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후원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되며, 후원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개정 2022.12.20>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았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5. 특별조합원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신설 2023.11.10>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 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13조(징계) ① 위원장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경고
3. 정권<신설 2022.12.20>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확정 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재심청구 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④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2.12.20>

제14조(포상) ①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인
2. 수석부위원장 : 1인
3. 임명직 부위원장 : 00명
4. 사무총장 : 1인

5. 감사위원장 : 1인

6. 고문 : 0명<신설 2023.11.10>

제16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각 국을 총괄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조합의 재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임명직 부위원장과 고문은 운영위원회를,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투표방법은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단독 입후보한 경우 1항에 따라 찬반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0.27.>

제19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불신임안은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20조(기구의 설치)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총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인권조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 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① 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전・후 4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와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공고방법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심의·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조합비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제명, 정직, 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12.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조합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4조(구성)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방법, 소집시기,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2.20>
② 투표방법은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조합의 선출직 임원, 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신설 2022.05.22.>

제25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대행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 임명직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국의 부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 사항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총국

제29조(구성) ① 위원장은 조합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정책국, 총무국, 조직국, 복지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교섭교육국 등의 국장을 두고, 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장과 국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06.08.><개정 2023.11.10>

③ 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국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1조(국장의 임면) 사무총국 각 국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국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국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3조(기능) 각 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국<개정 2022.12.20>

 가. 노동조합의 정책 공모 및 발굴<개정 2022.12.20>

 나.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 시청 및 외부기관과의 대응에 관한 사항

2. 총무국

 가.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관리

 나.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라. 노동조합 예산·회계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3.06.08>

3. 조직국

 가. 조합원 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조합원의 업무 중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등 애로사항에 관한 사항<개정 2023.06.08>

 다. 기타 조합원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06.08>

4. 복지국<개정 2023.06.08>

 가.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나.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 상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3.06.08>

5. 대외협력국<개정 2023.06.08>

 가. 시청 및 외부기관과의 대응에 관한 사항<개정 2023.06.08>

 나.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개정 2023.06.08>

 다. 대외 문건 관리<개정 2023.06.08>

6. 홍보국

 가.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 운영<개정 2023.06.08>

 다. 여론 수집 및 조사<개정 2023.06.08>

 라. 각종 설문조사 실시 및 관리<신설 2023.06.08>

7. 교섭교육국 <신설 2023.11.10>

가.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 노사 교섭 주관 <신설 2023.11.10>

나. 조합 노동교육, 워크숍 등 노동관련 행사 <신설 2023.11.10>

다. 대의원, 조합원 간담회 운영 <신설 2023.11.1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3.06.08>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조합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장이 2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지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개정 2022.12.20.>

② 감사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37조(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사업, 운영, 회계 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인권조사위원회

제38조(구성 및 기능) ① 인권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원조사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부당한 압력이나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한다.

③ 인권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관장에게 시정, 문책을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의뢰 할 수 있다.

1. 징계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양정 기준
2. 직장 내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3. 직장 내 의도적인 신체접촉, 성희롱(언어), 성추행, 인신모독적인 사항
4. 직장 내 폭언, 폭행
5. 기타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회 의

제39조(성립 및 의결) 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기(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별지3호서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40조(진행)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노동조합 내 직무대행 순서에 따르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특별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42조(재정운영의 원칙)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3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정률제로 하며 매월 조합원 급여 중 기본급의 0.5퍼센트로 한다. 단, 최대 납부액은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기간인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04.07.><개정 2026.10.30.>

② 조합비 납부일은 급여일로 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③ 특별조합원은 가입할 때 1년 치 조합비를 연납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의 조합비에 갈음한다.<신설 2023.11.10>

제45조(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둔다.

③ 감사위원장은 매년 2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④ 공개는 인터넷이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

제46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47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④ 단체협약은 문서로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조정신청

제48조(조정신청)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해 산

제49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②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③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0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실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5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53조(운영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9. 0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0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8조는 규약 개정 이후 유예기간 1개월 이후 적용한다.

② 제18조는 규약 개정 이후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2. 0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8조는 규약 개정 이후 적용 유예기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3. 06. 0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04.0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건2) 2026년 제2차 추경 예산(안)

❑ 증감사유 : 수입(제4대 출범식 후원금) 증액 및 일부 지출 항목 증·감

❑ 추경안

▶수입내역(일반회계)

(단위: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추경안	기정액	증감
수입합계		350,952,229	346,975,129	**3,977,100**
조합비	조합비	331,200,000	331,200,000	
이월금	2025년 결산잔액	14,475,129	14,475,129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5,247,100	1,000,000	**4,247,100**
이자수입	이자수입	30,000	300,000	**△270,000**

❍ 변경 사유

- 제4대 출범식 후원금(4,200천원) 수입 반영에 따른 **기타잡수입 4,248천원 증액**
- 예금 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이자수입 270천원 감액**

▶지출내역(일반회계)

(단위: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산출기초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항	목	세목					
지출합계					**350,952,229**	346,975,129	**3,977,100**
조직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홍보비, 급량비 등)	홍보비, 급량비 등 16,000,000원×1식	**16,000,000**	13,000,000	**3,000,000**
			회의수당(임원, 대의원)	임원회의 30,000원×14명×24회 대의원대회 50,000원×60명×2회 노사협의회 30,000원×9명×10회 상급단체 월례회의 30,000원×3명×12회 회계감사 100,000원*3명*2회	**20,460,000**	14,000,000	**6,460,000**
			제4대 출범 출범식	제4대 출범 출범식 13,500,000원×1식	**13,500,000**	5,000,000	**8,500,000**
조직사업비	대내사업	조직역량강화	조직강화 물품	명절(1회) : 38,000원*2,000명 총회(1회) : 12,000원*2,000명	**100,000,000**	125,800,000	**△25,800,000**
		복리후생비	경조사	결혼, 장례 30,000,000원×1식	**30,000,000**	23,000,000	**7,0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404,229원	**6,404,229**	1,587,129	**4,817,100**

❍ 변경 사유

- 조합 홍보 및 물품 제작 등의 사업 추진과 제4대 출범 사전 회의, 노사협의회 등 회의 증가로 인한 급량비 증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천원 증액**
- 제4대 출범 사전 회의 및 대의원 수 확대, 노사협의회·상급단체 월례회의 신설에 따른 **회의수당 6,460천원 증액**
- 당초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와의 공동 출범식을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였으나, 상대 노조의 출범식 취소로 인한 단독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출범식 진행을 위한 **제4대 출범 출범식 13,500천원 증액**
- 명절 및 총회 선물 지급 운용 방식 효율화(각 연 1회)에 따른 **조직강화물품 25,800천원 감액**
- 조합원 경조사(결혼·장례 등) 발생 추이 증가에 따른 **경조사 7,000천원 증액**
- 수입 예산 증가 및 지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 4,818천원 증액**

❑ 2차 추경 예산(안)

2026년 2차 추경(안)

2026-10-30

수 입 예 산

(단위 : 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추경안	비율(%)	기정액	증감	비고
수입합계		350,952,229	100	346,975,129	3,977,100	
조합비	조합비	331,200,000	94.37	331,200,000		조합원 1,840명*15,000원*12개월
이월금	2025년 결산잔액	14,475,129	4.12	14,475,129		
기타잡수입	후원금 등	5,247,100	1.50	1,000,000	4,247,100	출범식 후원금 등
이자수입	이자수입	30,000	0.01	300,000	△270,000	

지 출 예 산

(단위 : 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추경안	비율(%)	기정액	증감	산출기초
항	목	세목						
지출합계				346,975,129	100.00	357,500,000	△10,524,871	
조직운영비	일반운영비	분담금	상급노조 분담금	71,688,000	20.43	71,688,000		공무원연맹 3,000원*1,650명*12개월 경기연맹 100,000원*12개월 서북부지부 (1,200원*520명+100,000원)*12개월

								경기본부 100,000원*12개월 공공협의회 100,000원*12개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전산비, 모바일투표, 우편요금등)	4,000,000	1.14	4,000,000		전산비, 모바일투표, 우편요금 등 4,000,000원*1식
			사무관리비(홍보비, 급량비, 조합운영 등)	16,000,000	4.56	13,000,000	3,000,000	홍보비, 급량비, 조합운영 등 16,000,000원*1식
			차량유지관리비	4,000,000	1.14	4,000,000		주유 및 정비 4,000,000원*1식 ※ 차량렌탈비 시운영비 지원
			회의수당(임원, 대의원)	20,460,000	5.83	14,000,000	6,460,000	임원회의 30,000원*14명*24회 대의원대회 50,000원*60명*2회 노사협의회 30,000원*9명*10회 상급단체 회의 30,000원*3명*12회 회계감사 100,000원*3명*2회
			손실보전(연가보상, 여비)	14,000,000	3.99	14,000,000		연가보상, 출장비, 초과수당 등 14,000,000원*1식
			제4대 출범 출범식	13,500,000	3.85	5,000,000	8,500,000	제4대 출범 출범식 13,500,000원*1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500,000	0.43	1,500,000		선거관리위원회 100,000원*3명*5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8,400,000	2.39	8,400,000		위원장 300,000원*12개월 수석부위원장 200,000원*12개월 사무총장 200,000원*12개월
			임원 활동 경비	9,000,000	2.56	9,000,000		임원 전체 750,000원*12개월
조직사업비	대내사업	조직역량강화	조직강화 물품	100,000,000	28.49	125,800,000	△25,800,000	명절(1회) 38,000원*2,000명 총회(1회) 12,000원*2,000명
			워크숍(대의원,임원)	13,000,000	3.70	13,000,000		대의원 및 임원 13,000,000원*1식
			간담회(부서, 대의원, 노사 등)	10,000,000	2.85	10,000,000		간담회 10,000,000원*1식
		교육사업	교육비	3,000,000	0.85	3,000,000		교육 3,000,000원*1식
		복리후생비	경조사	30,000,000	8.55	23,000,000	7,000,000	결혼, 장례 30,000,000원*1식
	대외사업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	3,000,000	0.85	3,000,000		공공사업 3,000,000원*1식
	투쟁사업	투쟁사업비	투쟁사업비	20,000,000	5.70	20,000,000		투쟁사업 20,000,000원*1식
기금조성	적립금	기금적립	특별기금	3,000,000	0.85	3,000,000		특별기금 3,000,000원*1식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404,229	1.82	1,587,129	4,817,200	예비비 6,404,229원*1식

2026년 특별기금 적립(안)

(단위 : 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추경안	기정액	증감	비고
합계		38,654,681	38,654,681		
이월금	2025년 결산액	35,154,681	35,154,681		
적립금	2026년 적립금	3,000,000	3,000,000		
이자수입	이자수입	500,000	500,000		이자수입